

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

제 출 자 : 동작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(행정자치부 훈령, 2014.11.14)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변경함
 - “경리관”을 → “재무관” 으로 변경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 - (1) 입법예고(2015. 8. 13 ~ 9. 2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 - (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이 조례 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 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.</p> <p>1. 징수관, <u>경리관</u>, 물품관리관, 채권(무)관리관, 지출원, 출납 원 및 유가증권(수입증지 포 함)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 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</p>	<p>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징수관, <u>재무관</u>, ----- ----- ----- -----</p>